

[일련번호 : 6]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처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수강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강좌프로그램 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좌프로그램의 개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 처리기간은 2일로 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아래표와 같이 임대성 외 39건의 환불신청에 대

한 처리를 최소 2일에서 최대 37일 지연 처리하였으며, 환불신청을 처리하지 않거나(2건) 환불금액 계산 착오(1건) 등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처리 부적정 내역

연번	신청자	신청일	환불금액(원)	환불처리일	지적사항
1		23.1.9.	42,670	23.1.20.	환불처리지연(8일)
2		23.1.9.	82,670	23.1.20.	환불처리지연(8일)
3		23.1.20.	40,000	23.1.31.	환불처리지연(4일)
4		23.2.2.	25,000	23.2.7.	환불처리지연(2일)
5		23.2.7.	25,000	23.2.13.	환불처리지연(3일)
6		23.2.16.	15,000	23.2.24.	환불처리지연(5일)
7		23.3.6.	10,670	23.3.14.	환불처리지연(5일)
8		23.3.24.	48,000	23.4.5.	환불처리지연(7일)
9		23.4.14.	37,500	23.4.20.	환불처리지연(3일)
10		23.4.18.	24,000	-	환불 미처리
11		23.4.21.	50,000	23.4.26.	환불처리지연(2일)
12		23.4.7.	10,000	23.5.10.	환불처리지연(21일)
13		23.4.28.	30,000	23.6.26.	환불처리지연(37일)
14		23.5.11.	26,670	-	환불 미처리
15		23.5.25	12,390	23.5.31.	환불처리지연(2일)
16		23.6.1.	15,000	23.6.9.	환불처리지연(4일)
17		23.6.2.	20,000	23.6.8.	환불처리지연(2일)
18		23.6.28.	60,000	23.7.5.	환불처리지연(4일)
19		23.7.6.	53,340	23.7.12.	환불처리지연(3일)
20		23.7.14.	37,500	23.7.21.	환불처리지연(4일)
21		23.7.17.	30,000	23.7.27.	환불처리지연(5일)
22		23.8.9.	20,000	23.8.16.	환불처리지연(3일)
23		23.8.23.	15,000	23.8.29.	환불처리지연(2일)
24		23.10.5.	15,000	23.10.16.	환불처리지연(5일)
25		23.11.14.	20,000	23.11.22.	환불처리지연(5일)
26		23.12.6.	12,000	23.12.12.	환불처리지연(3일)
27		23.12.19.	12,000	23.12.26.	환불처리지연(3일)
28		23.12.27.	25,000	24.1.19.	환불처리지연(15일)
29		24.1.19.	16,000	24.1.25.	환불처리지연(3일)
30		24.2.7.	13,330	24.2.14.	환불처리지연(2일)

연번	신청자	신청일	환불금액(원)	환불처리일	지적사항
31		-	4,000	24.2.14.	환불 신청서 없음
32		24.3.15.	70,000	24.4.4.	환불처리지연(13일)
33		24.3.15	75,000	23.3.18.	환불금액 7,500원 과소 지급 (잔여 3개월 + 당월 1/2)
34		24.3.19.	62,500	24.3.26.	환불처리지연(4일)
35		24.7.5.	8,300	24.7.12.	환불처리지연(4일)
36		24.7.8.	8,300	24.7.19.	환불처리지연(8일)
37		24.7.22.	50,000	24.7.26.	환불처리지연(3일)
38		24.8.9.	20,000	24.8.16.	환불처리지연(3일)
39		24.8.20.	20,000	24.8.30.	환불처리지연(7일)
40		24.9.4.	13,340	24.9.20.	환불처리지연(8일)
41		24.10.10.	60,000	24.10.17.	환불처리지연(4일)
42		24.10.24.	56,250	24.10.29.	환불처리지연(8일)
43		24.12.1.	20,000	24.12.13.	환불처리지연(2일)
44		24.12.5.	13,340	24.12.13.	환불처리지연(5일)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한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58,170원을 환급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